



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I. 지방계약관련 질의회신

1. 공사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질 의 ||

-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기 위하여 기존 2차선 아스콘 포장도로를 노견쪽으로 폭=1.18m, 깊이=1.15m, 굴착하여 KP주철관 100mm를 매설한 후 재포장하는 공정이며, 되메우기 후 콘크리트 포장, 아스콘 덧 쉬우기 포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 설계내역서상 콘크리트 포장부분의 품셈적용이 설계상 콘크리트 타설(무근, 펌프카타설, 슬럼프15)로 되어있으나, 실제 현장여건 상 시공은 콘크리트 포장포설(폭 : 1.18m, 길이 : 4,515m)로 시공 중입니다.
- 콘크리트 타설폼(무근 펌프카 레미콘타설, m³개념)과 콘크리트포장 포설폼(t=20cm이하 레미콘포설, m³개념)간에는 공사 시공단가의 차이가 있는 관계로 발주처에 포장포설로 설계변경을 요청했으며, 이후 수차례 구두상으로 재요청했지만 발주처에서는 답변을 미루고 있는 상황임.(참고로 당초 설계는 추정 설계된 것으로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도 공사계약금액의 변동은 없음)

-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시공중 설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하여 발주처에 설계변경 요청(현장실정보고)을 하였으며 발주처에서 답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0조, 제21조 등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그 밖에 추가공사 발생·특정공정 삭제·공정계획 변경·시공방법 변경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처에서 판단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설계도서, 현장상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턴키 대형공사의 발주자요구 증가물량 산출방법에 대한 질의

질의

- 당사의 00종합행정타운 건립공사현장은 00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수요처로 하여 조달청이 조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여 계약체결하고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턴키공사진행중에 발주자의 요구로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증가 및 감소된 공사물량의 산출방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음,
- 갑설 : 증가물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하여 당초 산출내역서의 수량에 비례하도록 적용해야함
- 을설 : 증가물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4항에 의거하여 수정전 설계도면과 수정후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적용해야함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27조(대형공사 등의 설계변경) 제4항에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질 의 】

□ 발주처가 공사에정가격 작성 시 모든 비목의 품셈수량을 임의로 조정하여 설계금액 대비 약 35.43%를 부당하게 감액한 후 설계금액의 약 63.5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에 부치어 입찰참가자가 예가대비 87.751%에 낙찰된 후 부당하게 감액된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발주처는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 주장함.

질의1) 발주처의 주장대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한 것인지

질의2)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발주처(계약담당공무원)의 포괄적 재량에 의하여 공사에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인지

【 회 신 】

○ **질의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 의서」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진행 중 물량누락, 공정변경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원가계산이나 단가·금액의 과다·과소산정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2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하여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며,
 - 또한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원가계산 작성시 부당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심사방법 질의

|| 질 의 ||

-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공동수급체 평가방법)에 있어, 제1항제1호다항에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지 실적계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대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하는 바,
-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여 서울시 업체의 참여비율 49%이상 공동이행으로 입찰한 경우로서 시공경험 평가지 갑사와 을사의 구성원 각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나온 점수에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를 하는지? 아니면 갑사와 을사의 구성원 전원의 실적을 시공비율에 곱하여 합산 적용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 회 신 ||

- 귀 질의의 경우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공동수급체 평가방법)제1항제1호 다목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갑사와 을사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에 곱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점수를 평가하면 될 것입니다.
-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 운영요령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이 공사금액의 100분의 40이상 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49%이상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공동 참여토록 입찰 공고에 정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장기계속공사 사고이월의 경우 선금급 지급에 관한 질의

|| 질 의 ||

- ○○ 군청에서 발주한 도로확포장 공사를 계약체결 시공 중 총 공사 부기금액이 2,458백만원 중 금차분 1,110백만원에 대한 공사에 대하여 선금급 20%(222백만원)을 수령하였음.

- 동 공사 현장에서 실제 261백만원을 수행하였고 나머지 공사금액은 사고이월하였으며 기 수령한 선금급 222백만원에 대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하여 전액공제 정산처리한 바, 금차분이 사고이월된 바 있는 공사에 대해서도 선금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지급 신청액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259호)에 의하여 계약금액 중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동 요령에 정한 비율로 신청하고,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경우 선금 미사용액은 출납폐쇄기한내에 반환한 후 다음연도 초에 다음연도 공사비와 합산하여 동 요령에 정한 비율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운영요령에 관한 질의

질의

- 산업기술지원단지지원에관한 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5개 기관이 출자법인 및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로서,
- 회계업무는 정관과 예산회계규정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고, 동 규정 및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토록 규정된 경우
- 우리 재단의 예산회계규정 시행규칙상 물품·용역의 지역제한 범위가 5억미만으로 정해져 있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은 추정가격 3억원 미만으로 되어있는 바, 우리 재단에서 적용하여야 할 규정은?

회신

○ 귀 재단이 지방계약법령을 당연 적용 또는 준용하는 기관으로서 (지역)제한 경쟁입찰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도의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을 준용한다면 이에 따라야 하나,

○ 지방계약법령의 의무 적용 또는 준용 대상기관이 아닌 법인으로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부규정상 지역제한 금액을 별도로 정하였다면 그 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질의

Ⅰ 질 의 Ⅰ

- 생활폐기물 수입·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14년 정도 연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왔는 바,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보증이행증권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Ⅰ 회 신 Ⅰ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보증금의 면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의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능하나,
-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물품구입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여부에 관한 질의

Ⅰ 질 의 Ⅰ

- 지방자치단체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시공업체가 발주한 수조를 운송업체가 운반하는 도중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도로위의 각목으로 인해 차량이 튀면서 트럭과 철길 굴다리 보호대가 충돌하여 수조가 파손되어 준공지연, 이와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 제3항제1호 및 4호에 해당되어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동 예규 제25조제3항의 지체상금 부과조건으로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제24조(지체상금)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 동 조 제3항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와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귀 질의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등으로는 보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사항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9. 적격심사 기준에 대한 질의

【 질 의 】

□ 프린터 소모품(연간단가) 계약의 경우 계약이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계약금액이 1.9억원 이하로 입찰시 최저가로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기간 중 재생품 납품 시비 및 공급 지연 등의 사례가 있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향후 동 계약 발주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 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려고 하는 바, 1.9억원 이하의 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의 적용방법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1.9억원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나,

○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동조 제3항에 의거 1.9억원 미만의 물품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관한 질의

Ⅰ 질 의 Ⅰ

-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장 감정가격·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3-2-2 거래실례가격이 없거나 감정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바,
- 취·정수시설물 청소용역의 설계에 있어 예정가격을 견적가격으로 작성하고자 청소실적이 있는 8개 업체에게 견적을 받았으나 견적가격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경우 견적가를 적용함에 있어 최저가 또는 산술평균가 중 어떤 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Ⅰ 회 신 Ⅰ

-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원가계산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기타용역의 경우 원가계산 작성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5-1 제2호에 의거 4-5-1 제1호 및 4-4-1내지 4-4-6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에 의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가 청소용역 등 기타용역인 경우라면 4-4-1 내지 4-4-6에 의거 원가계산을 하고, 당해 노무비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에 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견적가격은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 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하며 거래실례가격이 없거나 감정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바,
-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는 경우라면 견적가격 중 당해 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11. 물품제작구매설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질의

Ⅰ 질 의 Ⅰ

- 지하철 0호선 00역 등 5개 역사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구매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중 1개 역사에서 석면발생으로 일시정지를 지시하였고, 3개 역사는 승강장 연단부 콘크

리트 구조물 보강으로 연장사유가 발생하여 전체 5개 역사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의 연장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호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 등으로 인하여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은 당초 분할납품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분할납품을 하는 경우 등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12. 지체상금 등에 관한 질의

【 질 의 】

- 질의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지체상금)제2항에 의하면 지체상금 부과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물품의 일부는 계약기간내에 납품하여 검사를 거친 후 발주기관이 인수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관리·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의 물품은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경우 지체상금의 부과는 전체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금액에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체상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 질의 2) 계약목적물의 일부는 이행되었으나 전부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물품납품이 지연될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기성금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 질의 3) 가능하다면,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의 전부이행을 완료 (검사완

료)한 시점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아직 계약이행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기성대가에서 개략적인 예상 지체상금을 공제하여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 지체상금을 산출하여야 하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인수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검사를 완료하여 관리·사용하고 있는 물품에 해당된다면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3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 기납대가의 지급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완료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일 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동 조건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지체상금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한이 지체되고 있는 경우 기성대가 지급은 당해 지체상금 예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성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3.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변경계약 관련 질의

질의

- 질의1)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전환한 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E/S) 적용은 총 계약금액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전환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E/S를 적용하는지 여부
- 질의2) 관급자재로 전환하여 공급시 소요되는 비용이 계약상대자와의 사급자재 계약금액(계약단가 × 관급전환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기성대가 지급시 공제하도록 하였는데 이 때 계약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 **질의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급자재의 관급자재 전환과 관련하여 E/S적용은 관급자재 전환일 이전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조정기준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전환대상 자재금액을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총액 E/S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나, 사급자재의 관급자재 전환일 이후 물가변동조정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에서 관급자재 전환대상 자재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총액E/S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질의2에 대하여)**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사급자재와 관급자재의 차액정산 시점에서는 변경계약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1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의

【 질 의 】

- 질의 1)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도로 확·포장공사에 있어,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물량내역서상에 뒷채움 물량이 누락되어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인데, 이를 설계서의 누락으로 보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설계도면상 보차도경계석의 물량내역서에 콘크리트 물량, 거푸집 물량 및 PE비닐 물량이 누락되어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발주기관(감리단 포함)에서는 단가산출서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3) 도로공사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상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포설작업은 “다짐 후 1층 두께가 10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층은 10cm로 2회 포설하고 다짐해야 하는데, 물량내역서에는 2포설, 다짐물량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4) 보도포장공 중 화강석 판석포장과 특수돌 포장은 물량내역서에 부족하게 설계되어 있어 동 물량내역서상의 물량으로는 시공하기에는 부족한 경우, 설계서의 오류로 보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 **질의1, 3, 4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공종 등이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질의2에 대하여** 단가산출서는 기초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발주처의 내부문건으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이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며,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확정된 후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15. 시설공사 적격심사에 따른 시공실적 인정범위에 대한 질의

|| 질 의 ||

- 질의 1) : 적격심사 대상 1순위 업체가 제출한 시공실적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2007. 6. 2 준공된 공공기관 도급공사로 복합공정(토목 56%+건축 44%) 으로 되어 있는데, 시공실적 평가시 실제 시공한 토목 56%만 인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2007년도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사 실적신고 지침대로 주된 1개의 공정인 토목(100%)으로 실적을 인정해야 되는지 여부
- 질의 2) : 위 질의1에서 복합공정으로 보아 토목, 건축 각각의 공종별로 실적을 인정할 경우, 민간(법인 또는 개인)에서 발주한 공사실적의 경우에도 복합공정(토목+건축)으로 별도 각각의 공종별 실적을 인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대한건설협회 지침대로 주된 1개의 공종에 대해서만 공사실적을 인정해야 되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안부 예규)」 [별표1] Ⅲ. 최근 3년간이상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 제1항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중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관련협회에서 확정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의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공사의 실적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각각의 실적을 중복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귀 질의 경우 동 기준〔별표1〕Ⅲ. 최근 3년간 이상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별표1〕Ⅱ.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에 의한 실적외에 3년간 업종별 실적의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공사의 실적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평가하며, 이 경우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공사의 실적인 경우에도 발주자로 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에 의하여 평가하되,
- 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에서는 동 기준〔별표1-1〕에 의하여 복합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시공한 내용(복합공정의 경우 공종별 실적)대로 실적증명서를 발급해야 할 것이며, 적격심사를 주관하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실적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II. 수의계약 관련 질의모음

1.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계약방법 질의

Ⅰ 질 의 Ⅰ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설치와 관련하여 예상 설계내역은 대부분이 CCTV관련 재료비이고 설치시 기 설치된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예산과목이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이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6호 마목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조항에 의거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직접 생산하는 업체와 수의계약하여 CCTV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Ⅰ 회 신 Ⅰ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 이 경우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 내용이 정보통신공사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시공을 할 수 없으므로 공사와 관급자재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수의계약 안내공고 기간 계산 방법 질의

Ⅰ 질 의 Ⅰ

-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2이상의 견적서 제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3~5일간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에 3~5일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예 날짜만 3~5일 확보만 하면 되는지, 24시간을 1일로 보고 계산을 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관련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IV-1-(2)-가-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3~5일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기간은 날짜로 기산하여 공고일 + 공고기간(3~5일) + 개찰일로 계산하고 공고시간은 제한이 없으나 개찰시간은 근무시간내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3. 수의계약 제재처분 방법 질의

【 질 의 】

- 질의1) 수의계약 결격사유 e, f, h 등 지방자치단체 계약과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2) 소액수의 계약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제재 처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 질의3)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전 행정기관을 의미하는 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이면 도교육감소속기관만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

- **질의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10일이상 지체상금 부과, 시공명령 거부, 5회 이상 하자보수, 불법하도급,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진 경우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하지 않거나 계약포기 또는 공사포기를 한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IV-1-(2)-가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해 자치단체와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소액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자치단체별로 비치된 결격자명부를 확인하여 결격사유 해당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질의2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1년간 당해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체결을 하지 못함을 통지하고 결격자명부 등재, 산하·소속기관 통보 및 재공고를 하여야 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닌 견적서 제출이므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나 입찰보증금 귀속조치는 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이행중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계약보증금 귀속 및 계약해제·해지 통지를 하고 결격자명부 등재 및 소속기관 등에 통보합니다.
- **질의3에 대하여)** 당해 자치단체란 발주기관이 소속된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말하며, 지방교육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산하에 있는 교육청·학교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체방침을 정하여 지역교육청 단위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수의계약 체결시 낙찰율 질의

Ⅰ 질 의 Ⅰ

-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추정가격 3천만원(현행 5천만원)이하의 물품, 용역으로 (음식물, 농축수산물 등)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은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Ⅰ 회 신 Ⅰ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 3천만원(현행 5천만원)이하의 물품·용역으로서 음식물·농축수산물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VI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기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낙찰율 또는 최저가와 관계없이 예정가격 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격·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체결을 하면 됩니다.

5. 관급자재 구매방법에 관하여 질의

Ⅰ 질 의 Ⅰ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관급자재는 조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의 품질, 수급사항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급자재를 직접 공급할 경우 일반물품 구매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Ⅰ 회 신 Ⅰ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조달청에 모든 물자의 조달 구매를 의뢰하여야 하나,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억원미만 물품과 동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지역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자체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공사자재는 조달구매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외에 자체공급 또는 조달구매 여부는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구매방법을 선택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관급자재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의 규정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추정가격 5백만원(현행 2천만원)초과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2인 이상 견적을 받고, 추정가격 5백만원(현행 2천만원)이하는 1인 견적에 의할 수 있으며, 당해 시·군 관할지역내에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이내인 경우에는 참가범위를 인접지역 이상으로 확대하여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 이외에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각호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86조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발주시 공사자재를 사급이 아닌 관급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6. 학술용역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 질 의 ||

- 우리시에서는 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약 200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이나 기본계획 다시 말하면 기획설계가 마련되지 못하여 박물관전시연출에 관한 기획설계(일종의 전시물리스트목록 및 전시연출방안을 만들어 내는 기본계획단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현재 추정하는 기획설계 학술연구용역비는 6천만원정도입니다. 이 금액에 의하여 기획설계용역을 발주하는데 있어서 6천만원정도 되는 금액이어서 수의계약을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4호 차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 등의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특정인의 기술’이란 당해계약의 목적·성질상 특정인이 아니고는 수행할 수 없는 기술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술의 경쟁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동호 카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7.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시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 체결 질의

|| 질 의 ||

-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재공고까지 진행하였으나 1개 업체만 참가한 경우
질의1) 입찰참가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여 새로운 공고를 하여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나, 사업내용상 지방계약법 제26조제1항(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의거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한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수의계약운용요령에 의거 수의계약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번에 걸쳐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입찰을 하였음에도 1인만 참가했기에 수의시담의 방법에 의하여 참가업체와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하여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1인참가)시 당초 입찰공고의 제안서 평가 후 70점 이상의 업체만 협상가능자로 선정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평가를 해야 하는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생략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 **질의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IV-2-나-②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당해 계약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2인 이상 견적을 제출받아 최저가격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 따라서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입찰에 부친 가격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당해 조건을 갖추고 견적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질의2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이 종결되고 수의계약으로 계약방법을 달리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수의계약 안내공고시 참가조건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8.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대한 질의

【 질 의 】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면 계약상대자 결정 시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액수의 계약건에서 2인 이상 견적제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재입찰공고 후 유찰될 경우에도 반드시 2인 이상 견적제출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소액수의계약 대상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시·도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을 안내공고하였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이거나 없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IV-1-(2)-가-⑧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하지 않고 2인 이상 수기견적을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는 바, 수기견적도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9. 측량수수료 집행방법 질의

Ⅰ 질 의 Ⅰ

- 질의1) 측량수수료가 3천만원(현행 5천만원)이하의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해 수기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예정가격과 낙찰률에 의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측량수수료는 가격경쟁이 어려운 만큼 '수행능력평가기준'을 정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지 여부
 - 또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수의계약을 제외하고는 측량수수료가 3천만원(현행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수수료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수행능력평가기준'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지도 여부
- 질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14조(검사)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동법 시행령 제56조(검사조서의 작성생략)에서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측량 또는 감정평가수수료도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검사조서 작성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Ⅰ 회 신 Ⅰ

- **질의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IV-4-가-⑯의 규정에 의하여 1인견적이 가능하고 금액기준은 없습니다.
 - 다만, 2인 이상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 IV-4-나-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도·기술능력·경험·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추정가격 3천만원(현행 5천만원)이하로서 동 요령 VI-5-㉔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

역으로 견적제출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가격·품질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할 수 있는 바,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 결정은 지적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 및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면 될 것입니다.

-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가격경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 수행 능력평가기준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계약방법은 계약담당자가 당해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여 계약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의 규정에 따라 결정 집행하는 것입니다.

- **질의2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나,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계약담당자 또는 검사자가 지출결의서의 검사·검수란에 날인을 하면 될 것이며, 계약금액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는 용역성과물이 있으므로 검사절차에 따라 검사를 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건축설계용역 관련 질의

Ⅰ 질 의 Ⅰ

- 디자인공모당선자인 “갑”(건축사무소)은 현재 법인은 존재하나 건축사업무는 폐업하고 당시 법인 대표이사(디자인공모 주도)가 “을”(건축사무소)를 설립한 상태로 이 경우 “갑” 법인이 모든 권한 일체를 “을”(건축사무소)에게 위임 또는 양도한다는 공증서가 있을 경우 “을”(건축사무소)과 지방계약법 제25조제4호 차목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Ⅰ 회 신 Ⅰ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용역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설계 등과 관련법령에 의하여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합병·분할합병 또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하여 권리의무관계를 승계한 경우에는 계약승계도 가능할 것입니다.

- 귀 질의내용으로는 당초 법인과 새로 설립된 법인의 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판단하기 곤란하나, 상법·건설기술관리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분할·합병·분할합병 또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를 하여 권리의무관계가 승계된 것이 아니라면 수의계약 체결이 곤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1. 차량임차 수의계약관련 질의

【 질 의 】

- 작은 전세버스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고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 등 계약건에서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차량 년식을 제한하는데 버스 1대당 1억원인 차량을 년식 제한하면 2-3년된 차량을 버리고 신차로 구입하란 말입니까? 고유가에 시대에 영세한 저의 업체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차량만료기간이 9년이며 6개월식 4번을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식으로 제한하는 법이 있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제한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정하는 제한사항 및 제한기준 이외의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나,
- 추정가격 3천만원이하(현행 5천만원 이하) 용역을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IV-1-(2)-가-④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적·규격·품질·기술장비 보유상황 등으로 제한하여 견적을 제출받을 수 있으므로 인명 안전을 위하여 노후차량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차령 2-3년 또는 최근 연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적용하거나 계약조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12.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가”목과 관련하여, 학술연구용역 30,000천원 이하 건에 대해 사립대학교와 수의 계약코자 하는 바, 동법 시행령 108조 2항에 의거, 반드시 시군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 3천만원(현행 5천만원) 이하로서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VI-5-@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으로 건적제출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수기로 복수견적을 받아 가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부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13. 혼잡으로 인한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 질 의 ❏

- 현재시공 중인 포장공사에 별도의 포장공사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포장공사 계획도에 대하여 출입구 한 개의 사용으로 두개의 공사가 진행되는데 혼잡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작업상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공과정상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호 나목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IV-3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 귀 질의의 경우 진입로를 제외하고는 공사현장 중첩 및 혼잡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규공사를 별도 발주하는 경우 기존공사의 진입로 부분을 마지막 공정으로 조정하면 혼잡발생이 감소되어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 추가 발주하는 공사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 질 의 】

- 하천옹벽공사 중 설계는 140m구간으로 완료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70m구간만 발주 경쟁입찰 계약하여 공사중인 구간에 추가 사업비가(예산과목 틀림 공사비 6억) 배정되어 추가발주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IV-3-가-②의 규정에 의하여 금차 공사가 시공과정상 전차공사 또는 다른 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대상공사 평가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등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설계변경은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 변경만을 의미하고 성질상 당초 계약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변경을 말하고,
- 당초 공사의 설계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증가되는 공사와 관계없이 당초 계약목적물을 시공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되는 공사는 추가공사에 해당할 것이므로 추가공사는 별도 발주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작업상 혼잡은 일부 접합부분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여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는 바,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공사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발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5. 협상에 의한 계약 재공고 후 유찰시 진행 질의

Ⅰ 질 의 Ⅰ

- ISP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1차 입찰 공고시 1개 업체만 참여하여 유찰, 2차 재공고시에도 1개 업체만 참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재공고 입찰에 부친경우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2인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 이 경우 최저가 입찰로 하여 적격심사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견적을 받은 후 다시 최상위 업체만 기술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Ⅰ 회 신 Ⅰ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도 경쟁입찰방식에 해당하므로 입찰공고 및 재공고를 하며, 재공고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시의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의 특성은 입찰자의 제안서를 받아 창의성·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계약방법이므로 유찰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입찰성립이 되도록 가능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제안요청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IV-2-나-②-㉞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로 최저가 전자견적(G2B)을 받고 제안내용을 시담(협상)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이는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는 것이 원칙이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계약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하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6. 농공단지 업체와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Ⅰ 질 의 Ⅰ

- 강관 생산업체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악화로 인하여 모든 설비 시설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동종업체와 같은 공법의 제품을 생산하기로 협력계약을 맺어 판매 납품의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Ø50mm ~ Ø250mm의 직접생산 시설을 갖추고 생산하고 있으며, 협력사에서는 Ø300mm ~ Ø400mm의 직접생산 시설을 갖추어 생산하여 교류하고 있는 바, 양 당사자 간 시설투자의 절감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협력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자치단체와 물품의 관경 Ø50mm ~ Ø300mm를 수의계약이 체결된 후 상대회사로부터 Ø300mm는 직접 생산하지 않으므로 “이 계약은 전부 무효이다.” 라고 주장하는 바, 이 경우 본 계약은 전부 무효인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 농공단지 입주공장에서 직접생산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의계약은 법령에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접생산물품 외의 물품을 수의계약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 직접생산규격 외의 물품은 제외하고 계약체결을 하였어야 할 사항이며, 계약체결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행정상 착오로 직접생산물품 외의 규격을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라면 생산규격 외의 물품은 제외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